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 3424호

2017. 8. 24.(목)

함께
서울



목 차

◆ 고 시

제2017-311호 봉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	3
---	---

◆ 공 고

제2017-1889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	18
제2017-1890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	20
제2017-1901호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공사완료 공고	21
제2017-1905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(등록말소) 공시송달 공고	23
제2017-1906호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1차 공사완료 공고	23
제2017-1907호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공사완료 공고	25
제2017-1910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공고	26

◆ 구 고 시

제2017-89호 도시계획시설(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관 건립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(노원구)	27
제2017-87호 도시관리계획(신사생활권 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(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(은평구)	31

◆ 구 공 고

제2017-758호 도시관리계획[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]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(광진구)	33
제2017-797호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공사완료 공고(동대문구)	34
제2017-707호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(노원구)	34
제2017-1067호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주민열람 공고(강서구)	37
제2017-1235호 천왕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(안)에 대한 재공람공고(구로구)	38
제2017-1142호 도시계획시설(장군봉근린공원 조성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(관악구)	43
제2017-1152호 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(관악구)	44
제2017-1089호 도시계획시설(녹지)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(서초구)	46

◆ 사업소공고

제2017-174호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전
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(한강사업본부) 49

◆ 기 타

제2017-170호 하천점용(변경)허가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(서울지방국토관리) 50

고 시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11호

봉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2010-101호(2010.3.18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47호(2016.8.11.)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[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]의 봉래동1가 일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·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 합니다.

2017년 8월 24일

서울특별시 장

1. 정비구역 지정

가. 정비구역의 명칭 : 봉래 도시환경정비구역

나.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조서

구분	구역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규	봉래 도시환경정비구역	중구 봉래동1가 48-3 일원	-	증) 30,743.3	30,743.3	

다. 지정사유

- 대상지는 도심내 경복궁-광화문-서울시청-송례문-서울역으로 이어지는 세종대로변에 입지하고 있으며 ‘2025 서울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’의 토지이용계획 상 도심핵 지역으로서 도심부 상징적 업무중심지역으로 유지·발전토록 개발방향이 설정되어 있음
- 또한 대상지 주변으로 서소문·양동·남대문 도시환경정비구역과 북창·회현·남대문 시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·개발 및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, 연세봉래빌딩, 우리빌딩, WISE타워 등 고층의 건축물이 입지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건축물에 대한 개발압력이 증대되고 있음
- 이러한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대상지 내부는 저층의 노후불량 건축물(87.1%)이 다수 분포하여 도시환경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임
- 이에 2025년 서울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,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에 의거,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함

2. 도시환경정비계획

가. 토지이용계획

구 분	명 칭	면적(㎡)			비 율(%)	비 고	
		기정	변경	변경후			
합 계		—	(증)	30,743.3	30,743.3	100.0	—
정비기반 시설 등	소 계	—	(증)	6,639.0	6,639.0	21.6	—
	도 로	—	(증)	6,142.0	6,142.0	20.0	—
	공공공지	—	(증)	497.0	497.0	1.6	—
사업시행 지구	소 계	—	(증)	12,872.6	12,872.6	41.9	—
	제1지구	—	(증)	2,826.3	2,826.3	9.2	—
	제2지구	—	(증)	3,378.9	3,378.9	11.0	—
	제3지구	—	(증)	4,115.9	4,115.9	13.4	—
	제4지구	—	(증)	676.9	676.9	2.2	—
	제5지구	—	(증)	939.5	939.5	3.1	—
	제6지구	—	(증)	935.1	935.1	3.0	—
존치지구	소 계	—	(증)	11,231.7	11,231.7	36.5	—
	존치1지구	—	(증)	372.1	372.1	1.2	—
	존치2지구	—	(증)	2,854.2	2,854.2	9.3	—
	존치3지구	—	(증)	1,002.6	1,002.6	3.3	—
	존치4지구	—	(증)	436.3	436.3	1.4	—
	존치5지구	—	(증)	2,138.9	2,138.9	7.0	—
	존치6지구	—	(증)	366.6	366.6	1.2	—
	존치7지구	—	(증)	3,079.4	3,079.4	10.0	—
	존치8지구	—	(증)	819.6	819.6	2.7	—
	존치9지구	—	(증)	162.0	162.0	0.5	—

나. 용도지역·지구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1) 용도지역 결정조서

구 분	면 적(㎡)			비 율(%)	비 고
	기 정	변 경	변경후		
합 계		30,743.3	—	30,743.3	100.0
상업지역	일반상업지역	30,743.3	—	30,743.3	100.0

2) 용도지구 결정조서

가) 미관지구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연장(m)	폭원(m)	최초 결정일	비고
기정	①	미관지구	중심지	칠패로변	27,360 (5,056)	400 (180)	12	1982.4.22 (서고제164호)	
기정	①	미관지구	중심지	통일로변					
기정	①	미관지구	중심지	세종대로변	173,930 (6,195)	1,850 (229)	25		

주) ()는 구역 내의 면적임

나) 방화지구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지구명	지구의 세분	위치	면적(㎡)	연장 (m)	폭원 (m)	최초 결정일	비고
기정	①	방화지구	-	봉래동 48-3 일원	101,000 (30,743.3)	-	-	1973.8.1 (건고제317호)	집단

주) ()는 구역 내의 면적임

다.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: 변경

1) 도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광로	2	4	50~53 (50)	주간선 도로	1,500 (300)	세종로광장	서울역앞	일반 도로	-	1936.12.26 (총고722)	세종대로
변경	광로	2	4	50~53 (53)	주간선 도로	1,500 (300)	세종로광장	서울역앞	일반 도로	-		세종대로 일부폭원변경
기정	광로	3	11	40	주간선 도로	1,150 (210)	서울역광장	서대문광장	일반 도로	-	1936.12.26 (총고722)	통일로
변경	광로	3	11	40~43 (43)	주간선 도로	1,150 (210)	서울역광장	서대문광장	일반 도로	-		통일로 일부폭원변경
기정	대로	2	4	30~45 (30)	주간선 도로	1,340 (200)	남대문광장	중림동	일반 도로	-	1936.12.26 (총고722)	칠패로
변경	대로	2	4	30~45 (33)	주간선 도로	1,340 (200)	남대문광장	중림동	일반 도로	-		칠패로 일부폭원변경
신설	중로	2	-	14~15	집산 도로	232	봉래동1가 4-2	봉래동1가 79	일반 도로	-	-	세종대로 5길
신설	소로	1	-	10	국지 도로	103	봉래동1가 6-23	봉래동1가 126-2	일반 도로	-	-	세종대로 1길
신설	소로	3	-	6	국지 도로	85	봉래동1가 53-3	봉래동1가 88-1	일반 도로	-	-	(1,2지구 동측)

※ ()는 대상지 내의 폭원 및 연장임

(이하 여백)

- 도로 결정(변경)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광로 2-4호선	광로 2-4호선	- 도로폭원 일부변경 - 폭원 : 50m→53m - 연장 : 1,550m(구역내 300m)	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로 일부구간 폭원 변경
광로 3-11호선	광로 3-11호선	- 도로폭원 일부변경 - 폭원 : 40m→43m - 연장 : 1,150m(구역내 210m)	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로 일부구간 폭원 변경
대로 2-4호선	대로 2-4호선	- 도로폭원 일부변경 - 폭원 : 30m→33m - 연장 : 1,340m(구역내 200m)	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로 일부구간 폭원 변경
-	중로 2- 호선	- 현황 도로 시설결정 (세종대로5길) - 폭원 : 14~15m, 연장 : 232m	- 현황도로 노선번호 부여 -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공고고시(1965.12.30)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었던 도로로 금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
-	소로 1- 호선	- 현황 도로 시설결정 (세종대로1길) - 폭원 : 10m, 연장 : 103m	- 현황도로 노선번호 부여. -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공고고시(1965.12.30)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었던 도로로 금번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
-	소로 3- 호선	- 신규 도로 시설결정 - 폭원 : 6m, 연장 : 85m	정비계획에 따른 신규 시설결정

2) 공공공지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위 치	면 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기정	①	공공공지	봉래동1가 111-3 일원	497.0	-	497.0	1999.4.14 (서중고제19호)	

3) 철도(정거장)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세분	위치	폭 (m)	연장 (m)	면적 (㎡)	최초결정일	비고
기정	철도	도시철도 (1호선서울역)	서울역광장 (봉래동2가 122-27일대)	11.4 ~32.4	288.2	8,629.0	71.3.26 (건고158호)	- 중복결정 - 도로 : 8,629㎡ - 광장 : 8,319㎡
변경	철도	도시철도 (1호선서울역)	서울역광장 (봉래동2가 122-27일대)	11.4 ~32.4	288.2	8,932.7	71.3.26 (건고158호)	- 면적변경 - 출입구이전 : 증)303.7㎡ - 중복결정 - 도로 : 8,475.0㎡ - 광장 : 8,191.5㎡ - 입체결정 - 3지구 내 : 880.2㎡

4) 철도(정거장) 입체적 결정 조서

구분	시설명	시설의세분	위치	내용		기정	변경	변경후	최초 결정일	비고
변경	철도	도시철도 (1호선서울역)	남대문로5가 63-11번지 일대	면적 (㎡)	지상부	-	증)359.4	359.4	-	-
					지하부	-	증)520.8	520.8		
				길이(m)		-	증)42.6	42.6		
				폭(m)		-	증)9.3~17.6	9.3~17.6		
				높이(m)		-	증)18.5~44.9	18.5~44.9		

- 철도 결정(변경)사유서

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도시철도 (1호선 서울역)	· 철도 선형 변경 및 입체적 결정	·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3지구 주변에 있는 지하철출입구, 환기구등을 건축물 내로 이전설치에 따른 철도선형 변경 및 입체적결정

라. 정비기반시설의 설치(부담) 계획

1)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

사업 지구	시행지구 면적 (㎡)	대지면적 (㎡)	정비기반 시설면적 (㎡)	계획기반시설내 기존공공용지 (㎡)	대지내 폐지 국공유지 (㎡)	기반시설 부담면적 (㎡)	순부담율(%)			비고
							기반시설 (토지) 부담율	건축물 기부채납 부담율	합계	
계	14,519.5	12,872.6	1,646.9	-	-	1,646.9	11.3	1.8	13.2	평균 순부담율 11.3%
제1지구	3,395.5	2,826.3	569.2	-	-	569.2	16.8	-	16.8	
제2지구	3,907.5	3,378.9	528.6	-	-	528.6	13.5	-	13.5	
제3지구	4,592.5	4,115.9	476.6	-	-	476.6	10.4	0.9	11.3	
제4지구	742.8	676.9	65.9	-	-	65.9	8.9	2.4	11.3	
제5지구	939.5	939.5	0.0	-	-	0.0	0.0	11.3	11.3	
제6지구	941.7	935.1	6.6	-	-	6.6	0.7	10.3	11.3	

※ 순부담율 = 순부담 면적 ÷ (시행지구 면적 - 계획기반시설내 기존공공용지 면적 - 대지내 폐지되는 국공유지 면적)
4,5,6지구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 주민제안시 순부담율 11.3%이상 되도록 추가기부채납(건축물 등)을 계획
하되, 공공수요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조정토록 함

2) 정비기반시설 설치(확보)계획

가) 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 (관리청으로 무상귀속)

구분	위치		시설의 종류	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(㎡)			비고
				기정	증(감)	변경	
제1지구	소 계			-	증) 569.2	569.2	
	봉래동1가	45-1	도로	-	증) 14.4	14.4	
		52	도로	-	증) 72.1	72.1	
		52-1	도로	-	증) 0.4	0.4	
		53-2	도로	-	증) 13.0	13.0	
		53-3	도로	-	증) 36.1	36.1	
		58-4	도로	-	증) 159.4	159.4	
		65-5	도로	-	증) 32.2	32.2	
		72-1	도로	-	증) 6.0	6.0	
	순화동	199-4	도로	-	증) 4.1	4.1	
		204-5	도로	-	증) 14.4	14.4	
		205-2	도로	-	증) 29.2	29.2	
		206-2	도로	-	증) 1.4	1.4	
		206-3	도로	-	증) 0.4	0.4	
		207-23	도로	-	증) 17.3	17.3	
		207-24	도로	-	증) 17.9	17.9	
		207-25	도로	-	증) 15.0	15.0	
		207-26	도로	-	증) 56.0	56.0	
		207-27	도로	-	증) 2.0	2.0	
		207-31	도로	-	증) 1.0	1.0	
		208-2	도로	-	증) 46.2	46.2	
		208-4	도로	-	증) 26.6	26.6	
		208-7	도로	-	증) 4.1	4.1	
	소 계				증) 528.6	528.6	
2지구	봉래동1가	58-4	도로	-	증) 276.3	276.3	
		65-9	도로	-	증) 51.9	51.9	
		65-10	도로	-	증) 30.5	30.5	
		77-1	도로	-	증) 27.6	27.6	
		79	도로	-	증) 38.3	38.3	
		80	도로	-	증) 2.7	2.7	
		80-1	도로	-	증) 6.9	6.9	
		82	도로	-	증) 70.8	70.8	
		83	도로	-	증) 23.6	23.6	

구분	위치		시설의 종류	정비기반시설 부담면적(㎡)			비고
				기정	증(감)	변경	
3지구	소 계				증) 476.6	476.6	
	봉래동1가	132-4	도로	-	증) 76.3	76.3	
		132-6	도로	-	증) 38.1	38.1	
		134-2	도로		증) 5.7	5.7	
	남대문로5가	9-3	도로		증) 6.2	6.2	
		63-7	도로	-	증) 90.6	90.6	
		63-9	도로	-	증) 3.1	3.1	
		63-10	도로	-	증) 22.3	22.3	
		63-11	도로	-	증) 0.5	0.5	
		63-12	도로		증) 31.1	31.1	
		63-13	도로		증) 28.6	28.6	
		63-14	도로		증) 1.7	1.7	
		63-15	도로		증) 11.0	11.0	
		63-16	도로		증) 15.6	15.6	
		63-20	도로		증) 13.8	13.8	
		63-21	도로		증) 13.6	13.6	
		63-22	도로		증) 14.1	14.1	
		63-23	도로		증) 45.2	45.2	
		63-24	도로		증) 17.5	17.5	
		63-25	도로		증) 24.2	24.2	
		63-26	도로		증) 17.4	17.4	
4지구	소 계				증) 65.9	65.9	
	봉래동1가	126-2	도로	-	증) 65.9	65.9	
6지구	소 계				증) 6.6	6.6	
	남대문로5가	6-24	도로	-	증) 6.6	6.6	

※ 필지의 일부가 정비기반시설로 계획되는 면적은 사업시행시 측량 등을 통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면적으로 재산정하여야 함

마.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- 해당사항 없음

바.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계획

1) 기존건축물의 정비·개량계획

구 분	구 역 구 분		가 구 또는 획 지 구 분		위 치	정 비 개 량 계 획 (동)					비고
	명 칭	대지면적(㎡)	명칭	면 적(㎡)		계	존 치	개 수	철거후 신축	철 거 이 주	
신규	봉래구역	12,872.6	제1지구	2,826.3	중구 봉래동1가 48-3 일원	70	8	-	62	-	
			제2지구	3,378.9							
			제3지구	4,115.9							
			제4지구	676.9							
			제5지구	939.5							
			제6지구	935.1							

2) 건축시설계획

결정 구분	구 역 구 분		가구 획지 구분		위 치	주 된 용 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 (m)	비고
	명 칭	면 적 (㎡)	명칭	면 적 (㎡)						
신규	봉래 구역	12,872.6	제1지구	2,826.3	봉래동1가 57-2 일원	업무	60이하 (저층부 70%이하)	600/800/1,009이하	90 이하	일반 정비방식
			제2지구	3,378.9	봉래동1가 82 일원	업무	60이하	600/800/-	90 이하	일반 정비방식
			제3지구	4,115.9	봉래동1가 132-4 일원	업무	60이하 (저층부 65%이하)	600/800/949이하	90 이하	일반 정비방식
			제4지구	676.9	봉래동1가 126-1 일원	업무	60이하	600/800/-	90 이하	일반 정비방식
			제5지구	939.5	남대문로5가 6-15 일원	업무	60이하	600/800/-	90 이하	일반 정비방식
			제6지구	935.1	남대문로5가 6-8 일원	업무	60이하	600/800/-	90 이하	일반 정비방식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		해 당 없 음								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	• 건축한계선 - 세종대로, 통일로 : 5m - 세종대로(3지구에 한함) : 3m - 칠패로, 세종대로5길(2지구), 신설도로 : 3m - 세종대로1길, 세종대로5길 : 2m					• 고층부 벽면한계선 - 세종대로, 통일로(6층 또는 20m 이상) : 8m			
건축물 용적률 완화에 관한 계획		• 공공시설부지 제공시 - 1 + 1.3×(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)× (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3항에 의거 산정된 용적률)(%) • 지하철출입구 등을 건물 또는 대지내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거나 구분지상권 설정시 - 건물에 설치할 경우 : 용적률×(지하철출입구면적/건물면적)이내								
건축물 건폐율 완화에 관한 계획		• 지역특성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폐율 완화 - 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[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] 일반정비형 사업에도 건폐율을 80%까지 완화할 수 있다. 다만 건폐율 완화 부위는 저층부(5층이하)에 한하여 적용하고 고층부(6층이상)의 경우는 도시계획조례상의 건폐율을 적용한다.								
용 도		• 권장용도(전층) - 업무시설, 판매시설, 관광숙박시설, 주거복합 • 지정용도(1층) - 가로활성화용도 (판매시설, 근린생활시설(소매점, 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) 등)								
대지내 공지		• 간선가로변에 대지 내 조경 및 공개공지 집중배치 • 각 지구 내 전면공지를 포함하여 보행안전구간 최소 2m(권장 3m)를 확보 (무장애 디자인가이드라인 반영)								
기 타		• 시행지구 내 포함된 가로변 지장물(지하철 출입구, 변압기 등)은 획지 또는 건축물 내로 이전설치								

1지구 심의완화 사항	• 용적률 : ① + ② + ③ = 1,009%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: 600% ② 허용용적률 : 200%				
	목적	인센티브 완화 요건	산정방식	완화량	
	친환경 개발	녹색건축물 인증 (그린 1등급)	정량부여	100%	
		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(240kWh/㎡·y이하)			
		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(11%이상)			
	도시경제활성화	산업임대시설(942.1㎡이상) 설치	정률부여	50%	
	보행가로활성화	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시	정량부여	50%	
		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우수 등급시			
	③ 상한용적률 : 209%				
		구분	인센티브 산식	적용내용	완화량
	공공시설(도로) 기부채납	허용용적률 × (1+1.3× α)	800% × (1+1.3×0.201394)	209.4%	
	소계		-	209.0%	
3지구 심의완화 사항	• 용적률 : ① + ② + ③ = 949%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: 600% ② 허용용적률 : 200%				
	목적	인센티브 완화 요건	산정방식	완화량	
	친환경 개발	녹색건축물 인증 (그린 1등급)	정량부여	100%	
		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(240kWh/㎡·y이하)			
		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 (11%이상)			
	기존도시조직보전	민간부문시행지침에 따라 기존 도시조직 보전시	정량부여	50%	
	보행가로활성화	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시	정량부여	50%	
		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우수 등급시			
	③ 상한용적률 : 149.0%				
		구분	인센티브 산식	적용내용	완화량
		공공시설(도로) 기부채납	허용용적률 × (1+1.3× α)	800% × (1+1.3×0.11579)	120.4%
		건축물 기부채납	허용용적률 × {1+1.3× 환산부지/(대지면적-환산부지)}	800% × {1+1.3×41.3/(4,115.9-41.3)}	10.6%
		지하철출입구 이전 및 구분지상권 설정	허용용적률 × (지하철 출입구 등 연면적 / 건물연면적)	800% × (880.2㎡/39,026.8㎡)	18.0%
		소계		-	149.0%

※ 1지구와 3지구의 경우 주민제안내용에 따라 금번 정비계획 결정시 상한용적률 결정
2,4,5,6지구의 경우 향후 주민제안 시 세부건축계획 등을 포함하여 허용용적률인센티브 등 정비계획을 확정토록 함

사.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

구 분	계 획 내 용	비 고
도 시 경 관	• 사업시행시 도심내 상업업무지역의 도시적 이미지 조화를 위하여 Open Space개념과 도시적 디자인을 도입하여 기존의 노후된 건축물로 이루어진 경관을 개선하며, 사업대상지 주변의 고층빌딩군과 통일된 경관이미지를 연출하고 동시에 스카이라인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등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	
환 경 보 전	• 대지내 공지는 조경식재공간으로 조성하고 불투수 면적을 최소화 •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『생태면적률 도시계획활용 개선방안, 2007. 12,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』에 제시된 건축 유형에 따른 생태면적률 기준인 20%(일반건축물 기준) 이상 확보 • 조경계획 수립시 다층구조의 식생대를 조성하여 조류를 유인하고, 소규모 비오톱을 조성하여 새로운 녹지축을 형성 • 단지내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계획하고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설계기법을 도입하여 장래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토록 하며,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• 공원, 조경녹지 및 가로변에는 대기오염물질의 정화능력 및 적응력이 우수한 환경정화수종을 우선 식재토록 계획 • 조경식재, 가로수식재 등을 통해 수목에 의한 흡음 및 소음원에 대한 시각적 차폐 유도	
재 난 방 지	• 사업대상지내 보행로 및 공원은 우수침투가 가능한 투수성 바닥포장을 사용하고, 내구성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소재를 이용 • 구역내 자연지반을 최대한화하고 표면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수침투율이 높은 자연성포장 및 투수성포장재를 사용 • 시설물 및 공원·조경녹지 지하에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며 평상시 빗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	

아. 정비사업 시행계획

시행방법	시행예정시기	사업시행예정자	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	비고
도시환경정비사업	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5년 이내	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 (사업지구별 시행자)	-	-
		토지등 소유자 (췌메리츠화재)	-	1지구
		토지등소유자	-	3지구

자.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- 해당사항 없음

차. 정비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에 관한 계획

- 정비구역간 결합은 경미한 변경사항에 따라 처리함

카.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

1) 정비구역의 주택밀실 현황

가) 건축물 동수

구역내 건축물 동수			구역내 건축물 동수		
계	주거용 건축물	비주거용 건축물	계	유허가	무허가
70	5	65	70	59	11

나) 거주현황

유형별 주택호수		거주 가구수			구역내 거주 인구수			비고
		소계	가옥주	세입자	소계	가옥주	세입자	
계	5	10	9	1	12	11	1	
단독주택	5	10	9	1	12	11	1	
공동주택	0	-	-	-	-	-	-	

다) 규모별 거주현황

구역내 거주 주택(건축물)규모					비고
구 분	소계	60㎡이하	60초과~85㎡이하	85㎡초과	
계	5	1	3	1	
주거용	5	1	3	1	
비주거용	-	-	-	-	

2) 정비사업으로 인해 새로 건축되는 주택 현황 - 해당사항 없음

다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

구분	지구명	면적(㎡)	획 지		비고
			위 치	면 적(㎡)	
신규	제1지구	3,395.5	봉래동1가 57-2 일원	2,826.3	
신규	제2지구	3,907.5	봉래동1가 82 일원	3,378.9	
신규	제3지구	4,592.5	봉래동1가 132-4 일원	4,115.9	
신규	제4지구	742.8	봉래동1가 126-1 일원	676.9	
신규	제5지구	939.5	남대문로5가 6-15 일원	939.5	
신규	제6지구	941.7	남대문로5가 6-8 일원	935.1	

파.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- 해당사항 없음

하.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- 해당사항 없음

거. 세입자 주거대책

- 봉래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주거세입자는 총 1세대(1인)으로 분석됨
- 세입자 주거대책으로서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40조에 따라 『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』을 준용하여 보상하도록 함
- 또한, 세입자 주거대책을 위한 임대주택 등 주거확보가 곤란한 경우 공연장, 박물관, 미술관, 도서관, 관광숙박, 국제회의시설로 대체할 수 있도록 유도지침을 마련

너.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- 해당사항 없음

3. 관계도면 : 붙임 참조

- 지형도면 및 정비계획 결정도
 - 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도서 참조

4. 열람장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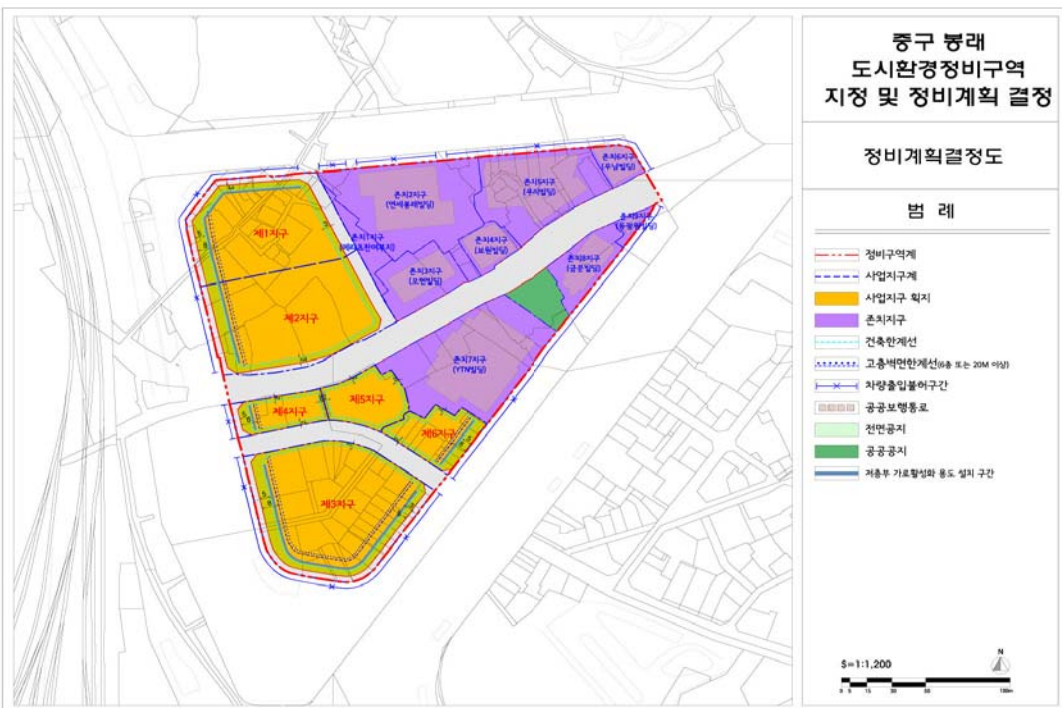
-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(☎ 2133-4633) 및 중구 도심재생과(☎ 3396-5774)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luris.molit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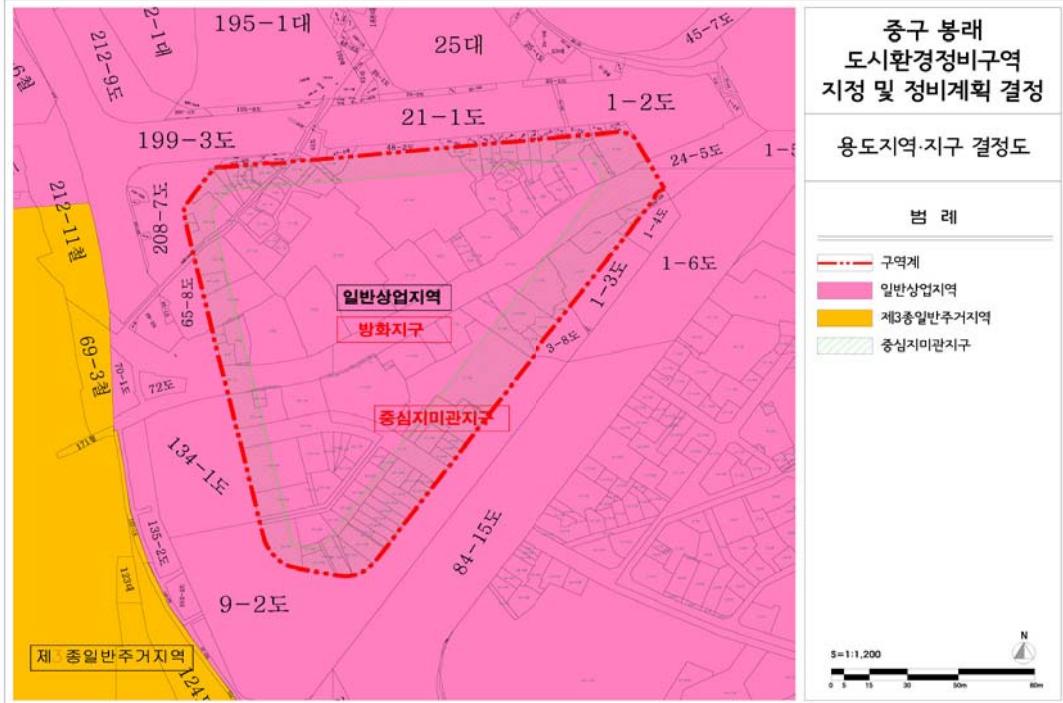
■ 정비구역 결정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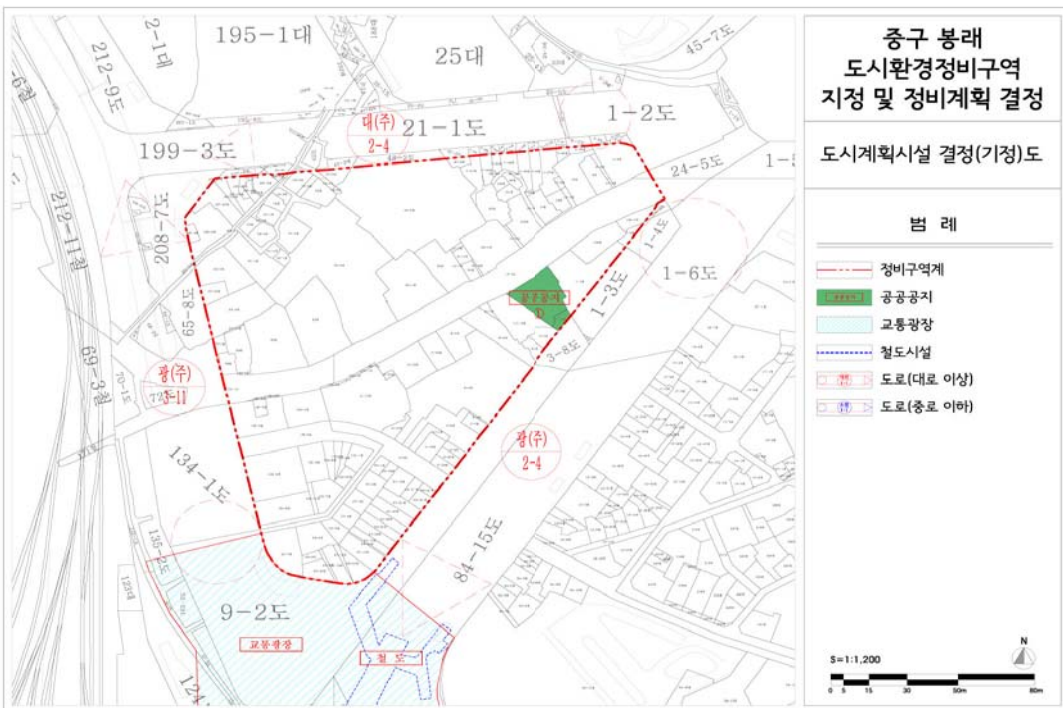
■ 정비계획 결정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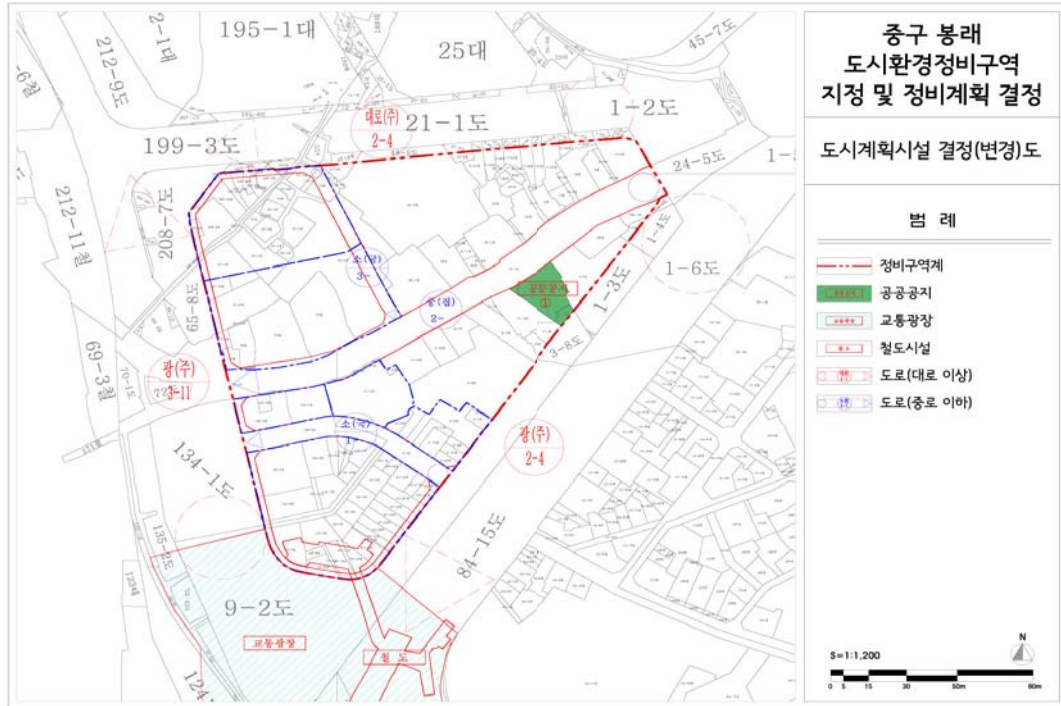
■ 용도지역·지구 결정(기정)도 : 변경없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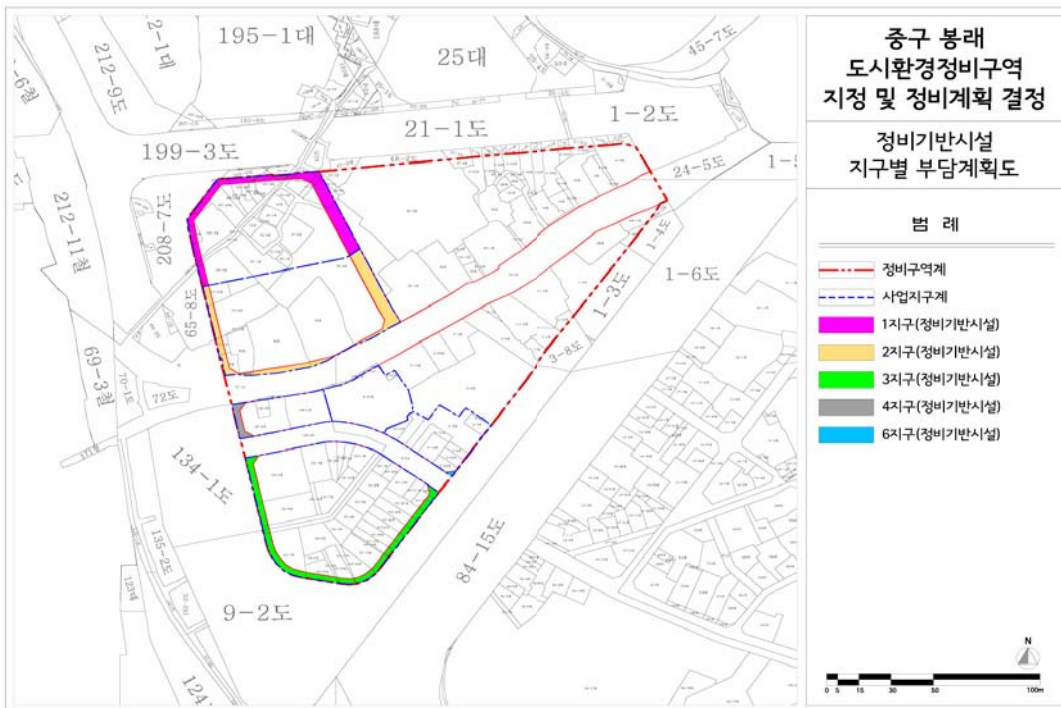
■ 정비기반시설(도시계획시설) 결정(기정)도



■ 정비기반시설(도시계획시설) 결정(변경)도



■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도



공 고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-1889호

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

‘도로법’ 제77조(차량의 운행제한) 위반자들에게 ‘질서위반행위 규제법’ 제17조, ‘지방세기본법’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‘행정절차법’ 제14조 제4항 및 ‘지방세기본법’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7년 8월 24일

서울특별시장

1. 건 명: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
2. 근 거: ‘도로법’ 제117조 및 ‘동법 시행령’ 제105조, ‘질서위반행위 규제법’ 제17조, ‘지방세기본법’ 제33조, 제61조, ‘행정절차법’ 제14조 제4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 - 가.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

대 상 자		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처분 내용
성명	주 소		
김민호	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133, ***동 ****호(통진읍, **휴먼시아 **마을)	일시: 2017-06-08 05:12 장소: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남단 내용: 제한 폭 0.28m 초과	처분일: 2017. 7. 27. 과태료: 30만 원 납기일: 2017. 9. 30.
이덕용	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까치로124번길 82, *동 ***호(원종동, ***)	일시: 2017-06-08 06:41 장소: 외발산동 롯데백화점 앞 내용: 제한 축하중 1.25t 초과	처분일: 2017. 7. 27. 과태료: 50만 원 납기일: 2017. 9. 30.
이승진	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102길 45, ***호 (독산동, *****)	일시: 2017-06-13 01:18 장소: 벌말로 내용: 제한 폭 0.28m 초과	처분일: 2017. 7. 27. 과태료: 30만 원 납기일: 2017. 9. 30.
정동창	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26길 *** (본동)	일시: 2017-06-13 09:07 장소: 행주대교 북단 과적검문소 내용: 제한 축하중 1.71t 초과	처분일: 2017. 7. 27. 과태료: 50만 원 납기일: 2017. 9. 30.
김승현	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경춘북로558번길 12, ***동 ***호 (퇴계원면, ***힐스테이트)	일시: 2017-07-03 16:34 장소: 양천로 마곡레포츨센터 앞 내용: 제한 높이 0.21m 초과	처분일: 2017. 7. 27. 과태료: 30만 원 납기일: 2017. 9. 30.

나.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

대 상 자		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처분 내용
성명	주 소		
서정현	경기도 시흥시 매화로 153, ***호 (도창동, *****)	일시: 2017-04-09 06:10 장소: 성산대교 내용: 제한 폭 0.28m 초과	처분일: 2017. 5. 26. 과태료: 30만 원 납기일: 2017. 7. 31.
박기일	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로 156, ***동 ***호 (동천동, **골든빌)	일시: 2017-04-12 07:30 장소: 개화동로 내용: 제한 길이 6m 초과	처분일: 2017. 5. 26. 과태료: 100만 원 납기일: 2017. 7. 31.
김대훈	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93-15, ***호 (연희동, ****)	일시: 2017-04-22 13:51 장소: 목동교 동측램프 내용: 제한 총중량 4.2t 초과	처분일: 2017. 5. 26. 과태료: 50만 원 납기일: 2017. 7. 31.
김익재	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297번길 14-3, ***동 ***호 (상동, **트라움)	일시: 2017-04-30 14:54 장소: 양화교 앞 내용: 제한 축하중 1.5t 초과	처분일: 2017. 5. 26. 과태료: 50만 원 납기일: 2017. 7. 31.

4. 공고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

5. 납부기한: 2017. 9. 30.

6.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

가.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·지점(한국은행 제외),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·지점,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, 인터넷(etax.seoul.go.kr)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,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나.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‘질서위반행위 규제법’에 따라 최고 75%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, 관허사업 제한, 신용정보 제공,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7.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

가. 이의제기 기한: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

나.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,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.

다.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.

라. 과태료 부과 처분청(이의제기서 제출처)

- 주소: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(마곡동)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
- 전화번호: 02-2657-7922, 팩스번호: 02-2657-7950
- 전자우편: skyblue7@seoul.go.kr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-1890호

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

도로법 제77조(차량의 운행제한)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(과태료의 부과)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, 수취인 불명, 수취인부재,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,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(공시송달)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(공시송달)합니다.

2017년 8월 24일

서울특별시장

1. 건 명 :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
2. 근 거 :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, 지방세기본법 제33조,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 - 가.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

대상자		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처분내용
성 명	주 소		
박영선	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856,**2-2**호(동읍)	일시 : 2017-06-06 07:16 장소 :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올림픽대로 내용 : 차량의 제한 폭 0.28m 초과	과태료:30만원
송운희	경기도 평택시 정암로54번길 53, 1**-**1호(이충동)	일시 : 2017-06-23 11:20 장소 :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개포3단지앞 내용 : 차량의 제한 폭 0.48m 초과	과태료:50만원

나.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독촉고지

대상자		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처분내용
성 명	주 소		
이영수	경기도 여주시 여영실로 **-***(천송동)	일시 : 2017-04-13 00:23 장소 :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동부간선도로 내용 : 차량의 제한 폭 0.25m 초과	과태료:30만원
임재훈	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금호안골길 **-***(부강면)	일시 : 2017-04-14 05:12 장소 :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남부순환로 내용 : 차량의 제한 폭 0.25m 초과	과태료:30만원
김영일	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15, *4-*0*호 (천곡동)	일시 : 2017-04-22 01:32 장소 :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동부간선도로 내용 : 차량의 제한 폭 0.45m 초과	과태료:50만원

4. 공고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5. 과태료 납부기한 : 2017. 9. 30.
6.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
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·지점(한국은행 제외),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·지점,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, 인터넷(etax.seoul.go.kr)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도 납부가 가능하며,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.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'질서위반행위 규제법'에 따라 최고 77%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, 관허사업 제한, 신용정보 제공,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7.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
 - 가. 이의제기 기한 :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
 - 나.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,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가 도달하지 않을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.
 - 다. 접수된 이의제기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.
 - 라. 문의처
 - 주소 :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-33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
 - 전화번호 : 02-2040-0324, 팩스번호 : 02-2040-0305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-1901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공사완료 공고

1. 동대문구고시 제2014-76호(2014. 7. 3.)로 도시계획시설(미관지구, 도로, 지구단위계획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438호(2014. 12. 18.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330호(2015. 10. 22.), 제2017-9호(2017. 1. 12.) 및 제2017-206호(2017. 6. 8.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된 「사가정길(장안삼거리~전농동사거리) 확장공사」의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이 완료되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.
2.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(☎ 02-2133-8084) 및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(☎ 02-3708-2558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7년 8월 24일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동대문구 장안동 555(장안삼거리) ~ 전농동 32(전농사거리)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1) 종류 :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
- 2) 명칭 : 사가정길(장안삼거리~전농동사거리) 확장공사

다. 사업의 규모

- 1) 전체 : 폭 25~28m, 연장 1,240m

- 2) 금회 : 폭 25~28m, 연장 520m
- 전농동사거리 구간 : 폭 25m → 25.5m, 연장 130m
 - 배봉사거리 구간 : 폭 24~25m → 25.5~28.75m, 연장 390m

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1) 성명 : 서울특별시
- 2)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

마. 사업기간 : 실시계획고시일 ~ 2017년 07월 31일

□ 위치도

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-1905호
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(등록말소) 공시송달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(등록말소)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17년 8월 24일
서울특별시장

1. 공고기간 : 2017. 8. 24. ~ 2017. 9. 6.(14일간)
2. 처분대상 및 내용

업 체 명 (대 표 자)	업종 및 등록번호	소 재 지	위반내용	위반 법규	처분내용	처분 근거
(주)진오종합건설 (최병은)	건축공사업 01-3857	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, 1326호(수서동)	건설업 등록증 대여	법 제21조 제1항	등록말소 (2017.9.1.)	법 제83조 제5호

3.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(이 문서 송달일)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(처분을 행한 행정기관)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(전화 02-2133-8208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-1906호
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1차 공사완료 공고

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 1지구 및 2지구 일부가 1차 부분준공 되었기에 「도시개발법」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.

2017년 8월 24일
서울특별시장

1. 사업의 명칭 : 은평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사업
2. 시행자 : 서울주택도시공사
-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길 621
3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일원
4.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

- 면 적 : 1,413,620.3㎡(1지구 및 2지구 일부)
- 용도별 면적

구 분		준공면적(㎡)	구성비(%)	비 고
총계		1,413,620.3	100.0	
주거용지	소 계	744,682.6	52.7	
	공동주택용지(아파트)	743,194.7	52.6	
	근린생활시설용지	1,487.9	0.1	
상업용지	소 계	9,316.4	0.7	
	일반상업	9,316.4	0.7	
도시기반 시설용지	소 계	639,510.7	45.2	
	도로	180,375.1	12.8	
	철도	-	-	
	완충녹지	13,727.1	1.0	
	연결녹지	13,801.6	1.0	
	근린공원	282,751.0	20.0	
	공공청사	14,530.0	1.0	
	학교	70,973.4	5.0	
	도서관	1,324.6	0.1	
도시기반 시설용지	사회복지시설	2,498.9	0.2	
	하천	59,529.0	4.2	
	유수지	-	-	
기타시설 용지	소 계	20,110.6	1.4	
	종교시설	8,566.0	0.6	
	주유소	745.1	0.1	
	유치원	2,572.4	0.2	
	공익시설	5,877.4	0.4	
	군사시설	2,349.7	0.2	

5. 준공일자 : 2017년 8월 18일

6. 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

- 기반시설은 「도시개발법」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귀속

※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(전화 : 02-2133-7217)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(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)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-1907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공사완료 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1978-274호(1978. 6. 12.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되고, 동대문구고시 제2009-53호(2009. 8. 20.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385호(2015. 12. 3.)로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 고시된 「배봉로 도로구조 개선(가각정리) 공사」의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이 완료되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.
2.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(☎ 02-2133-8084) 및 동대문구 도로과(☎ 02-2127-4813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2017년 8월 24일

서울특별시
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 37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1) 종류 :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
- 2) 명칭 : 배봉로 도로구조개선(가각정리) 공사

다. 사업의 규모

- 가각정리 : 연장 12m, 면적 24㎡

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1) 성명 : 서울특별시
- 2)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

마. 사업기간 : 실시계획고시일 ~ 2017년 07월 28일

□ 위치도

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-1910호

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공고

지방자치법 제46조(부의안건의 공고)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7년 8월 24일
서울특별시

구분	연번	부의 안건명	주관 부서
동의안 (1건)	1	서울무역전시장 관리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	산업거점조성반
의견 청취안 (1건)	2	서울특별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	공공재생과

구 고 시

◆ 노원구고시 제2017-89호

도시계획시설(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관 건립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17-63호(2017. 6.22)로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, 노원구공고 제2017-666호(2017.07.27) 및 노원구공고 제2017-667호(2017.07.27)로 도시계획시설(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관 건립)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하여 열람·공고 및 의견청취, 사업인정의제 사업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회신을 받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27-33 필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8월 24일
노 원 구 청 장

1. 사업시행위치 :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27-33
2. 사업시행자
 - 성 명 : 노원구청장
 - 주 소 :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437(상계동 701-1)
3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-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시설사업(공공청사)
 - 사업의 명칭 :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관 건립
4. 사업의 내용
 - 면 적 : 268㎡
 - 사업규모 : 공공청사 조성 268㎡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년간
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, 물건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: 따로붙임
7. 공고방법 : 서울시보 및 노원구보 게재
8.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자리경제과(☎02-2116-3494)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토 지 조 서

■ 사업명 :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관 건립 (중계동27-3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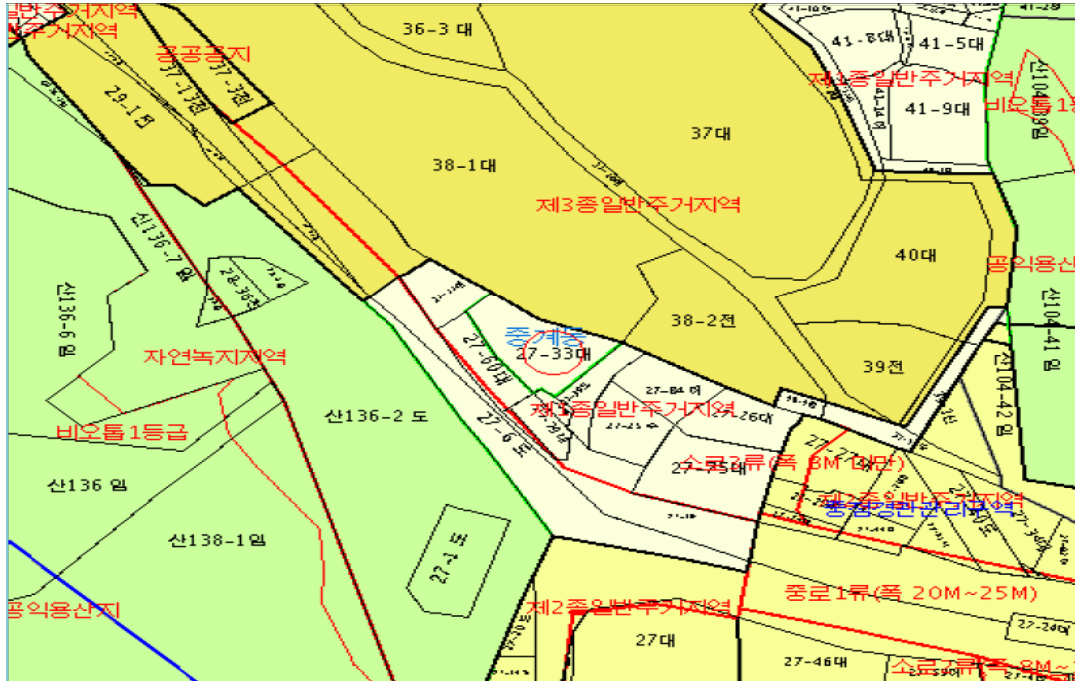
연번	소재지 지번	지목	지적 (㎡)	평면적 (㎡)	실제 이용 상황	소 유 자		이 해 관 계 인			비 고
						성 명	주 소	성 명	주 소	소유권이외의 관리내용	
1	노원구 중계동 27-33	대지	268	268	주거	노 원 구청장	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	전영수	서울시 송파구 송이로34길 29-6 301호 (문정동)	기존 무허가건축물	
								신종은	노원구 중계로6길 1-7	무허가건축물	
								박아련	노원구 중계동 27-33	기존 무허가건축물	
								백인순	중계로 8길 20	가건물	

물 건 조 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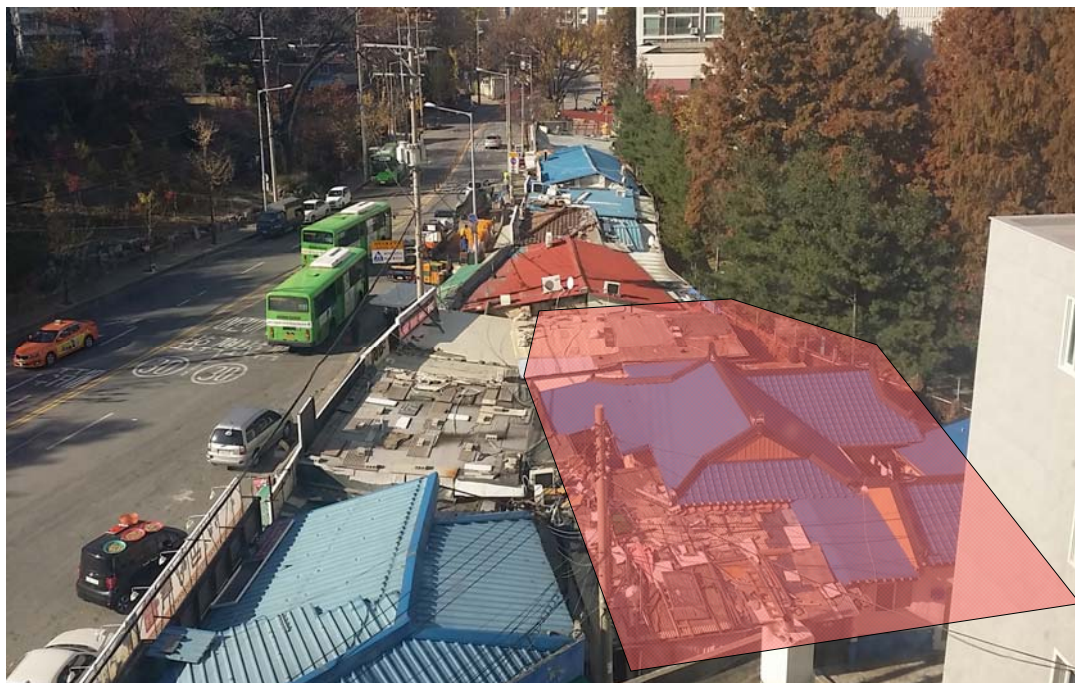
■ 사업명 :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2관 건립 (중계동27-33)

연번	소재지 지번	물건의종류	구조 및 종 류	수량 (㎡)	실제 이용 상황	소 유 자			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			비 고
						성 명	주 소	주 소	성 명	주 소 (면적㎡)	권리의 종류와내용 (거주자)	
1	중계동27-33 (중계로6길 1-1)	건축물	벽돌조	1 (51)	주거	전영수	서울시 송파구 송이로34길 29-6 301호(문정동)		임주현	중계동 38	세입자 (거주자)	기존 무허가건축물
2	중계동27-33 (중계로6길 1-7)	건축물	벽돌조	1 (127)	주거	신종운	노원구 중계로6길 1-7		-	-	-	무허가건축물
3	중계동27-33 (중계로6길 1-3)	건축물	벽돌조	1 (46)	주거	박아련	노원구 중계동 27-33		최영숙	중계로6길 1-3	세입자 (거주자)	기존 무허가건축물
4	중계동27-33	건축물		1 (1)	창고	백인순	중계로 8길 20		-	-	-	가건물
5	중계동27-33	건축물		1 (2)	창고	백인순	중계로 8길 20		-	-	-	가건물
6	중계동27-33	건축물		1 (4)	화장실 창고	백인순	중계로 8길 20		-	-	-	가건물
7	중계동27-33	건축물		1 (1)	창고	백인순	중계로 8길 20		-	-	-	가건물
8	중계동27-33	건축물		1 (2)	화장실 창고	백인순	중계로 8길 20		-	-	-	가건물

- 중계동 27-33
- 대상지 위치도



- 현황사진



◆ 은평구고시 제2017-87호

도시관리계획(신사생활권 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(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1996-231호(1996.08.21)로 구역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1998-68호(1998.03.20) 및 같은고시 제2007-57호(2007.03.08)로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변경(재정비)결정된 신사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신사동 19-98 외 4필지 토지소유자로부터 공동개발(지정)변경 제안이 있어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신사생활권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7년 8월 24일
은 평 구 청 장

가. 변경결정 사유

- 공동개발 지정(4필지)토지 및 선택적 공동개발(1필지)를 일단의 대지 계획 공동개발(건축물 신축) 추진

나. 도시관리계획(신사생활권 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(경미한 사항) 조서

-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

구 분	위 치		면 적(㎡)		비 고
기 정	신사동	19-97	41.5	3,103.5	선택적 공동개발
		19-98	3,062		공동개발 지정(4필지)
		19-168			
		19-169			
		19-170			
		19-147			
		19-189			공동개발 권장(2필지)
변 경	신사동	19-97	41.5	3,181.3	● 공동개발 지정(19-98, -168, -169, -170)토지와 선택적 공동개발(19-97) 토지는 일단의 대지로 <u>공동개발(1,176㎡)이 가능함</u>
		19-98	168.8		
		19-168	415.1		
		19-169	966.3		
		19-170	184.3		
		19-147	1140.8		
		19-189	264.5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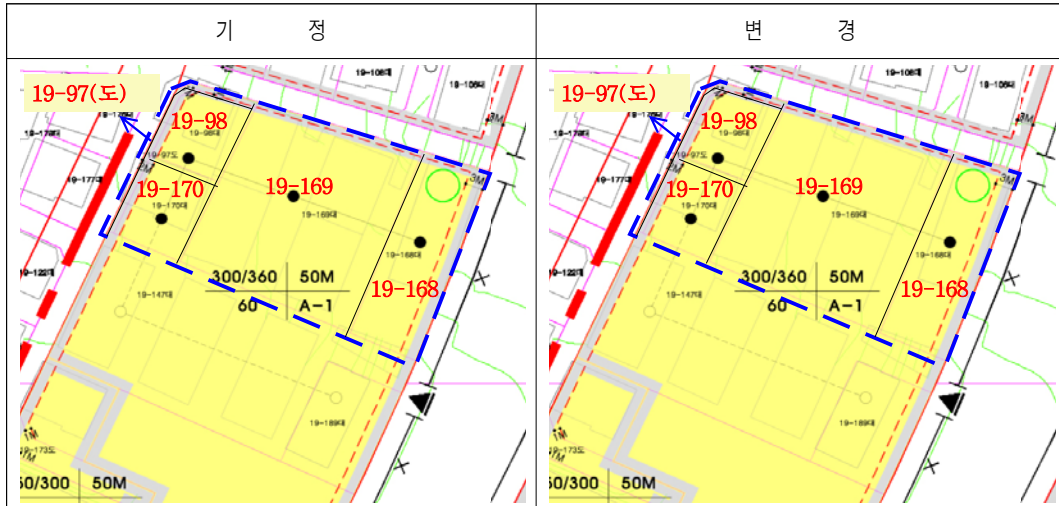
※ 공동개발 결정조서 상 잘못 표기된 면적오기(3,103.5㎡→3,181.3㎡)사항은 공부상 면적으로 바르게 정정함.

다. 기타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변경사항 : 변경내용 없음

라.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도시계획과(☎351-7412, 7413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

인에게 보입니다.

마. 도시관리계획(신사생활권 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(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



(공동개발 필지 : 신사동 19-97, -98, -168, -169, -170)

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.

구 공 고

◆ 광진구공고 제2017-758호

도시관리계획[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]결정을 위한 열람공고

1. 우리구 화양동 489일원 도시관리계획[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] 결정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법 시행령 제2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7조, 제68조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 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8월 24일

광진구청장

가. 열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5일간

나. 열람장소 : 광진구청 도시계획과(☎02-450-7686)

다. 열람내용

- 1)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안)
 - 가)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
 -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

구 분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
신 설	화양동 489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	광진구 화양동 489번지 일원	-	증)19,695.0	19,695.0	

- 2)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안)

- 가)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-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면 적(㎡)			비고
	기 정	변 경	변 경 후	
계	19,695.0	-	19,695.0	
제3종일반주거지역	19,695.0	감)17,764.0	1,931.0	
준주거지역	-	증)17,764.0	17,764.0	

- 나)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생략

- 3)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(안) : 생략

- 가) 가구 및 획지계획, 건축물의 용도, 건폐율, 용적률, 높이, 건축선 등에 관한사항

※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포함

라. 열람도서 : 생략(광진구청 도시계획과 비치 도서와 같음).

◆ 동대문구공고 제2017-797호

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공사완료 공고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4-34호(2014.03.31.) 실시계획인가 고시하여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으로 시행한 『이문동 305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』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이 완료되어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9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.

2017년 8월 24일
동 대 문 구 청 장

가. 사업의 위치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305-93 ~ 305-94간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 류 :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
- 명 칭 : 이문동 305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

다. 사업의 규모 : 도로개설 폭 6m, 연장 11m

라. 사 업 비 : 715백만원

마. 사업시행자의 성명·주소

- 성 명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
- 주 소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

바. 사업기간 : 2014. 03. 31. ~ 2017. 07. 28.

사. 준공 관련도서 : 게재 생략

아. 관계 도서 열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도로과(☎02-2127-481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◆ 노원구공고 제2017-707호

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

「도로법」 제7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,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차량의 운행 제한을 공고 합니다.

2017년 8월 24일
노 원 구 청 장

도로의 종류	구도	노선명	우이천로 월계로45길
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	· 총중량 32t을 초과하거나 축중량 10t을 초과하는 차량. · 차량제원 폭 2.5m, 길이 16.7m, 높이 4.0m을 초과하는 차량. · 기타 도로의 구조 보존과 통행에 위험이 되는 차량(건설기계 포함)	구간	· 우이천로(노원구 우이천로 102~월계로45길 21): 1,070m · 월계로45길(노원구 월계로45길 21): 510m

가. 기간 : 공고일부터 별도 공고시까지

나.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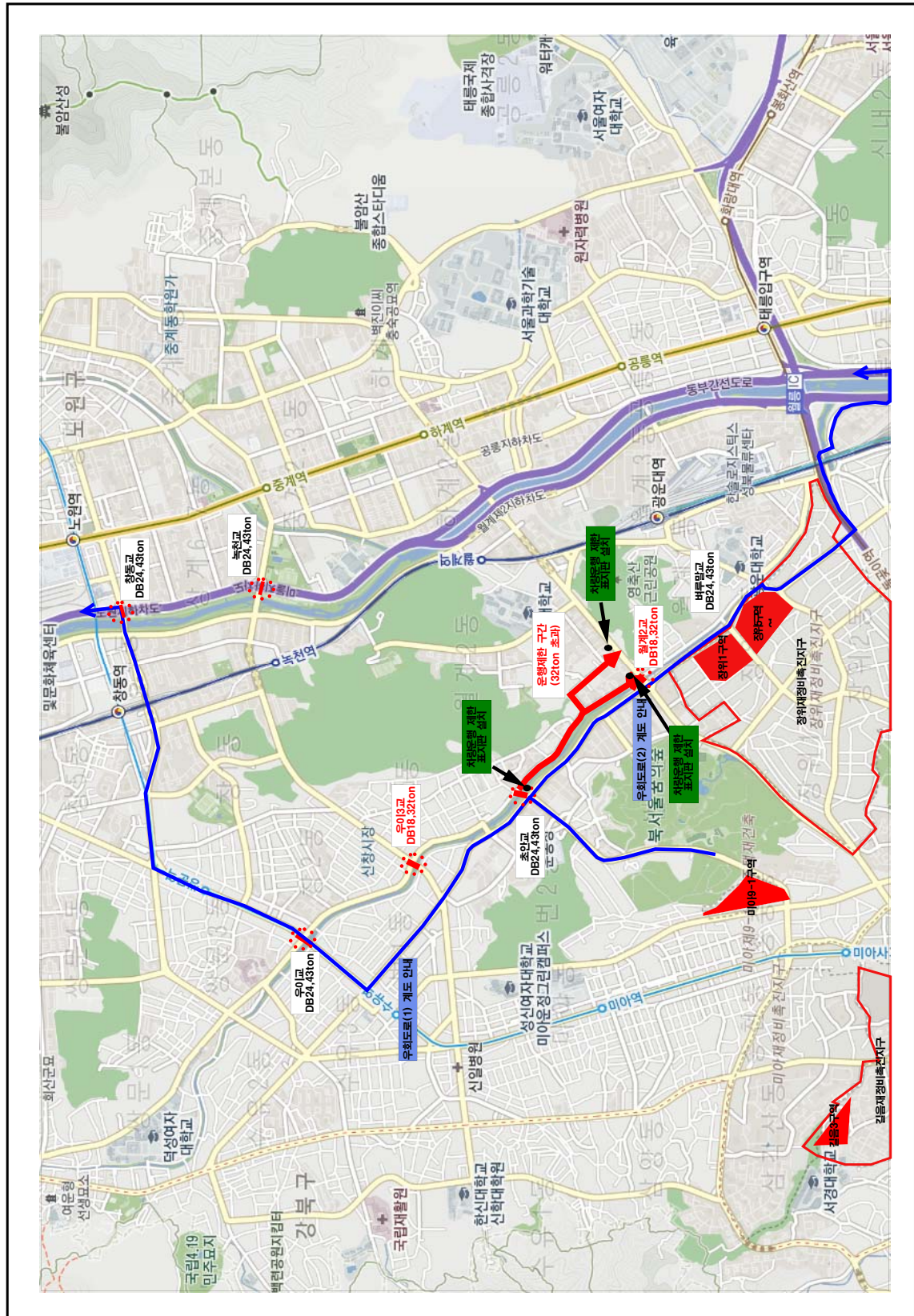
-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

다. 그 밖의 사항

- 공고사항에 대한 문의처: 노원구청 도시계획국 토목과(☎02-2116-4147~50)

※ 관련도면은 노원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보여 드립니다.

라. 첨부서류: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



◆ 강서구공고 제2017-1067호

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주민열람 공고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0-26호(2000. 2.11)로 결정된 공항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결정(안)에 대하여 2017년 4차 강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(조건부 가결)를 반영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도서를 열람합니다.
2. 본 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강서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8월 24일
강 서 구 청 장

I. 열람기간 :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

II.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계획과(☎2600-6384)

III.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변경결정 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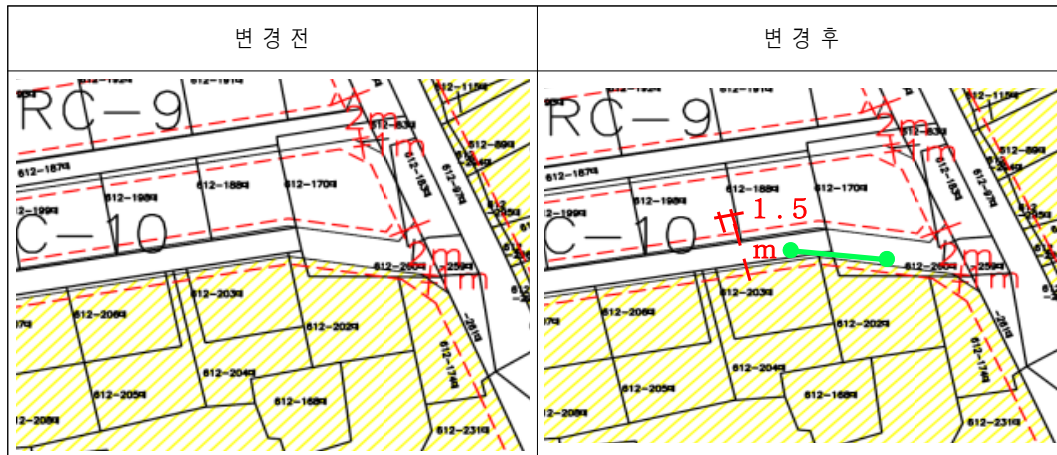
① 획지 및 공동개발에 관한 변경 결정 조서

위치	지목	면 적(㎡)		내 용	
		기정	변경	기정	변경
방화동 612-202	대	152	278	단독개발	공동개발
방화동 612-203	대	126		단독개발	

② 기타사항에 대한 변경 결정조서

위 치	계획내용		비 고
	기 정	변 경	
방화동 612-203	-	건축한계선 1.5m 신설	보차혼용통로 구조로 조성 및 사용

IV.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도



◆ 구로구공고 제2017-1235호

**천왕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에 대한
재공람공고**

1.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213-1번지 일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하여 주민 제안에 의한 천왕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구로구공고 제 2016-1214호(2016.10.06)로 공람공고 하였으나,
2. 2017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17.07.19) 심의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하고,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,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,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8월 24일
구로구청장

가. 공람기간 :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0일간

나.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: 구로구청 도시계획과(☎02-860-3249)

다. 의견 제출 방법 : 서면 제출

라. 기타사항

- 공람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 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합니다.

마. 공람내용

- 1) 정비구역 지정 조서

구 분	정비사업 명칭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신 규	천왕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	구로구 오류동 213-1번지 일대	-	10,451.4	10,451.4	-

※ 향후 측량성과에 따라 면적변동 가능

2) 정비계획(안)

① 토지이용계획

구 분		면 적(㎡)	구 성 비(%)	비 고
합 계		10,451.4	100.0	-
획 지	소 계	10,240.9	98.0	건축물 기부채납 (도서관, 어린이집 일부)
	획 지	10,240.9	98.0	
정비기 반 시설 등	소 계	210.5	2.0	-
	도 로	210.5	2.0	기부채납

② 용도지역·지구 결정(변경)조서

-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

구 분		면 적 (㎡)			구성비(%)	비 고
		기 정	변 경	변 경 후		
합 계		10,451.4	-	10,451.4	100.0	-
주거지역	제2종(7층)일반주거지역	10,356.4	감) 10,356.4	-	-	-
	준주거지역	-	증) 10,356.4	10,356.4	99.1	-
녹지지역	자연녹지지역	95.0	-	95.0	0.9	-

- 용도지구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구 분	도면표시 번 호	지구명	지구의 세 분	위치	면적 (㎡)	연장 (m)	폭원 (m)	최 초 결정일	비 고
기정	①	오류동길	일반 미관지구	오류동 297-10~ 오류동 118-2	10,376	707	양측 12	2007. 9. 13. (서울특별시 고시 제319호)	동부철강 부지측 제외

③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 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관련)

- 도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소로	2	-	8	국지 도로	590 (52)	오류동 166-20	오류동 216-2	일반 도로	-	-	-
변경	소로	2	(1)	8~12	국지 도로	590 (52)	오류동 166-10	오류동 216-2	일반 도로	-	-	일부 구간 확폭

※ ()는 사업지내 연장임

- 학교시설

구 분	시설명	시설의 세 분	위 치	면적(㎡)			최초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학교	중학교	구로구 오류동 산39-40 일대	9,267	감) 22	9,245	서고시 제50호 (82.2.3)	제2종일반주거지역 (7층이하)

④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

▶ 기정(안) 【구로구공고 제2016-1214호(2016.10.06)】

구 분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공동이용시설	경로당	지상 1층	-	300	300	
	어린이놀이터	지상층	-	570	570	
	주민운동시설	지상층	-	650	650	
	휘트니스 센터	지상 1,2층	-	1,350	1,350	커뮤니티시설:공동주택 지상연면적 3%이상

▶ 변경(안)

구 분	시설의 종 류	위 치	면 적(㎡)			비 고
			기 정	변 경	변경후	
공동이용시설	경로당	지상 1층	-	300	300	
	어린이놀이터	지상층	-	570	570	
	주민운동시설	지상층	-	650	650	
	휘트니스 센터	지상 1,2층	-	1,450	1,450	커뮤니티시설:공동주택 지상연면적 3%이상

⑤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계획
- 기존건축물의 정비·개량계획

구분	구역 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 치	정비개량계획(동)				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계	존치	개수	철거후 신 축	철거후 이 주
-	천왕역세권 도시환경정 비구역	10,451.4	획지	10,240.9	오류동 213-1번지일원	31	-	-	31	-

- 건축시설계획

▶ 기정(안) 【구로구공고 제2016-1214호(2016.10.06)】

구분	구 역 구 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 치	주 된 용 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(m) 최고층수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	천왕역세권 도시환경 정비구역	10,451.4	획지	10,240.9	오류동 213-1번지 일원	공동주택 판매시설 등	60% 이하 (40.77%)	495.9% 이하 (469.57%)	83.8m (83.4m) /지상 28층이하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			<table><tr><th colspan="2">구 분</th><th colspan="2">세대수</th><th rowspan="2">비 고</th></tr><tr><th colspan="2">합 계</th><td>481세대</td><td>100.0</td></tr><tr><td rowspan="4">분 양</td><td>계</td><td>330세대</td><td>68.6</td><td></td></tr><tr><td>전용면적 60㎡이하</td><td>155세대</td><td>32.2</td><td></td></tr><tr><td>전용면적 85㎡이하</td><td>175세대</td><td>36.4</td><td></td></tr><tr><td>전용면적 85㎡ 초과</td><td>-</td><td>-</td><td></td></tr><tr><td rowspan="4">장기전세</td><td>계</td><td>151세대</td><td>31.4</td><td></td></tr><tr><td>전용면적 60㎡이하</td><td>147세대</td><td>30.6</td><td></td></tr><tr><td>전용면적 85㎡이하</td><td>4세대</td><td>0.8</td><td></td></tr><tr><td>전용면적 85㎡ 초과</td><td>-</td><td>-</td><td></td></tr></table>				구 분		세대수		비 고	합 계		481세대	100.0	분 양	계	330세대	68.6		전용면적 60㎡이하	155세대	32.2		전용면적 85㎡이하	175세대	36.4		전용면적 85㎡ 초과	-	-		장기전세	계	151세대	31.4		전용면적 60㎡이하	147세대	30.6		전용면적 85㎡이하	4세대	0.8		전용면적 85㎡ 초과	-	-	
			구 분		세대수		비 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합 계		481세대	100.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분 양	계	330세대	68.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전용면적 60㎡이하	155세대	32.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전용면적 85㎡이하	175세대	36.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전용면적 85㎡ 초과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장기전세	계	151세대	31.4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		전용면적 60㎡이하	147세대	30.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용면적 85㎡이하	4세대	0.8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용면적 85㎡ 초과	-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		● 오리로변 : 건축한계선 3m ● 오리로9길 : 건축한계선 3m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비 고			● 공공기여 - 어린이집 : 연면적 총 632.7㎡ 중 218.9㎡ 기부채납 - 도서관 : 1,798.76㎡ 기부채납(토지지분 : 316.77㎡) ※ 추후 인허가 과정(정비구역 지정) 및 사업시행인가시 변동 될 수 있음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※ 상기 평형배분은 인허가시 조정될 수 있음

▶ 변경(안)

구분	구 역 구 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치	주 된 용 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(m) 최고층수	비 고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				
-	천왕역세권 도시환경 정비구역	10,451.4	획지	10,240.9	오류동 213-1번지 일원	공동주택 판매시설 등	60% 이하 (40.76%)	495.9% 이하 (439.03%)	83.8m (79.13m)/지 상 26층이하	-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					구 분		세대수		비 고	
					합 계		440세대	100.0		
					분 양	계	269세대	61.1		
						전용면적 60㎡이하	7세대	1.6		
						전용면적 85㎡이하	262세대	59.5		
						전용면적 85㎡ 초과	-	-		
					공공임대	계	171세대	38.9		
						전용면적 60㎡이하	171세대	38.9		
						전용면적 85㎡이하	-	-		
						전용면적 85㎡ 초과	-	-		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					• 오리로변 : 건축한계선 3m • 오리로9길 : 건축한계선 3m					
비 고					• 공공기여 - 어린이집 : 연면적 총 645.49㎡ 중 231.59㎡ 기부채납 - 도서관 : 1,835.23㎡ 기부채납(토지지분 : 336.54㎡) ※ 추후 인허가 과정(정비구역 지정) 및 사업시행인가시 변동 될 수 있음. ※ 어린이집의 토지지분은 지정 구립어린이집(오류동 213-10번지) 토지면적 277㎡로 계획하였으며, 토지지분과 함께 건축물 연면적 총 645.49㎡ 중 231.59㎡ 제외한 413.9㎡는 기부채납 대상이 아님.					

※ 상기 평형배분은 인허가시 조정될 수 있음

⑥ 정비사업 시행계획

▶ 기정(안) 【구로구공고 제2016-1214호(2016.10.06)】

시행방법	시행예정시기	사업시행예정자	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	비고
도시환경정비사업	정비구역지정(변경)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	㈜이레 H&C	481세대	-

▶ 변경(안)

시행방법	시행예정시기	사업시행예정자	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	비고
도시환경정비사업	정비구역지정(변경)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	㈜이레 H&C	440세대	-

⑦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

- 공공임대주택

▶ 기정(안) 【구로구공고 제2016-1214호(2016.10.06)】

기 준		전용면적				비 고
		60㎡이하	60㎡~80㎡이하	80㎡초과	합계	
기준	완화된 용적률의 50% (11,674.62㎡)	60%내외	30%내외	10%내외	100%	-
계획	12,426.24㎡	147세대 (97.4%)	4세대 (2.6%)	-	151세대 (100.0%)	-

▶ 변경(안)

기 준		전용면적				비 고
		60㎡이하	60㎡~80㎡이하	80㎡초과	합계	
기준	완화된 용적률의 50% (11,674.62㎡)	60%내외	30%내외	10%내외	100%	-
계획	11,723.76㎡	171세대 (100%)	-	-	171세대 (100.0%)	-

3)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정비계획(안) 참조

바. 관련도서 : 생략 (기타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같음)

◆ 관악구공고 제2017-1142호

도시계획시설(장군봉근린공원 조성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

1. 「건설부 고시」 제465호(1971.08.06)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「서울시 고시」 제2016-434호(2016.12.29.)로 공원조성(변경)계획 결정된 장군봉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(공원조성)을 시행하고자 『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, 인가를 위해 『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90조, 같은법률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.
2. 저촉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이해관계인 및 미수령자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같음합니다.
3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(☎879-6503)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

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8월 24일

관 악 구 청 장

가. 사업시행지 : 관악구 신림동(서원동) 산170-144번지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1) 종 류 : 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
- 2) 명 칭 : 장군봉근린공원조성사업

다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라. 사업규모

- 1) 위 치 : 관악구 신림동(서원동) 산170-144번지
- 2) 면 적 : 2,180㎡
- 3) 내 용 :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: 실시계획인가일부터 ~ 2018.12.31

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: 붙임문서 참조

사. 열람장소 : 관악구청 공원녹지과

아. 열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

연번	소재지	지목	현실적인 이용상황	면 적(㎡)		소 유 자	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
				지적	편입 면적	성 명	공유 지분	주 소	성 명	주 소	권리의종류 및내용
1	신림동 (서원동) 산170-144	임야	등산로, 임야	2,180	2,180	최충경	50분의 21	관악구 신림동 10-458			
						최백경	50분의9	관악구 신림동 10-426			
						최의경	50분의 20	관악구 신림동 10-458			

◆ 관악구공고 제2017-1152호

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

1. 「건설부고시」 제369호(1980.11.15.)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, 『서울시고시』 제2017-6호(2017.1.5)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변경 결정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(관악산도시자연공원 삼성동 동네뒷산공원화사업)을 시행하고자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

관한 법률」 제88조에 의거 관악구고시 제2017-8호(2017.02.16)로 실시계획인가된 사업의 변경을 위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.

2. 저촉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이해관계인 및 미수령자는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.
3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공원녹지과(☎02-879-6572)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8월 24일

관 악 구 청 장

가. 사업시행지 : 관악구 신림동 산86-6번지 일대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1) 종 류 : 도시계획시설(공원)사업
- 2) 명 칭 :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삼성동 동네뒷산공원화사업

다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

라. 사업규모

- 1) 위 치 : 관악구 신림동 산86-6번지 일대
- 2) 변경내용 : 지적분할에 따른 지번 변경 및 현황측량에 따른 지장물 면적 변경
(붙임참조)
- 2) 면 적 : 15,000㎡
- 3) 내 용 :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: 실시계획인가일 ~ 2018.12.31

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, 지장물 조서 : 붙임문서 참조

사. 열람장소 : 관악구청 공원녹지과

아. 열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

연번	구분	소재지	지목	현실적인 이용상황	면 적(㎡)		소 유 자	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
					지적	편입 면적	성 명	공유 지분	주 소	성 명	주 소	권리의 종류및 내용
합계						15,000						
1	당초	관악구 신림동 산86-6	임야	임야 경작	39,939	14,617	해주정씨 보덕공파종중		관악구 봉천동 1563-24			
2		관악구 신림동 327	전	주차장 농지	383	383	해주정씨 보덕공파종중		관악구 봉천동 1563-24			

연번	구분	소재지	지목	현실적인 이용상황	면 적(㎡)		소 유 자	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
					지적	편입 면적	성 명	공유 지분	주 소	성 명	주 소	권리의 종류및 내용
1	변경	관악구 신림동 산86-6	임야	임야 경작	20,033	9,117	해주정씨 보덕공파종중		관악구 봉천동 1563-24			
2		관악구 신림동 산86-7	임야	임야 경작	5,500	5,500	해주정씨 보덕공파종중		관악구 봉천동 1563-24			
3		관악구 신림동 327	전	주차장 농지	383	383	해주정씨 보덕공파종중		관악구 봉천동 1563-24			

지장물 조서(건물)

연번	구분	소재지 (구지번)	물건 종류	구 조	면적(㎡) 및 규격	소 유 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	세 대 주	세 대 원
						성 명	주 소	성명	주 소	권리의 종류 및 내용		
1	당초	관악구 광신길 142 (관악구 신림동 산86-6)	주택 (무허가)	블럭조	84	해주정씨 보덕공파 종중	관악구 봉천동 1563-24					
			음식점 (무허가)	판넬	72							
1	변경	관악구 광신길 142 (관악구 신림동 산86-6)	주택 (무허가)	블럭조	75	해주정씨 보덕공파 종중	관악구 봉천동 1563-24					
			음식점 (무허가)	판넬	110							

◆ 서초구공고 제2017-1089호

도시계획시설(녹지)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

1. 건설부고시 제642호(1978.03.29.)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(녹지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

- 375호(1979.08.22.)로 지적승인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75호(2017.07.20.)로 실시계획인가된 경부간선도로변 시설녹지(한남I.C~양재I.C 만남의 광장간 6.9km)에 대하여,
2. 도시계획시설(녹지)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(변경)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관련서류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.
 3.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,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.
 4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(☎02-2155-6898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니 본 실시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초구청(공원녹지과)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8월 24일
서 초 구 청 장

가. 실시계획의 주요내용

- 1) 사업 시행지의 위치: 양재동 산57-20번지 외 1필지
(변경내용: 토지분할로 인한 지번 변경)
 - 2) 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
 - 가) 사업의 종류: 도시계획사업(녹지) -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
 - 나) 사업의 명칭: 녹지조성 및 토지보상
 - 3) 사업의 면적 및 규모(변경없음)
 - 가) 면 적: 1,280㎡
 - 나) 내 용: 토지보상
 - 4)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없음)
 - 가) 성명 :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
 - 나) 주소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번지
 - 5)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: 실시계획고시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
(변경없음)
 - 6) 수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 : 따로붙임(변경내용: 토지분할로 인한 보상필지 지번변경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로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추가)
- 나. 열람기간: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(열람시간 09:00~18:00)
- 다. 열람장소: 서초구청 공원녹지과(☎02-2155-6898)
- 라.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토 지 조 서

연번	위 치	편입지번	지목	면적(㎡)		소유자			관계인			비고
				지적	편입	성명	주소	지분	성명	주소	관리의 종류 및 내용	
	계			1,280.0	1,280.0							
1	양재동	산57-20	임야	1,180.0	1,180.0	주식회사 호주건설	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7길 14, 1층		케이비 부동산 신탁주식회사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(역삼동)	수탁자	
2	양재동	산71-35	임야	100.0	100.0	신흥호	캐나다 온타리오주 버링톤 크로스원즈 코트 2144	1/2				
						신재호	캐나다 온타리오주 버링톤 크로스원즈 코트 2144	1/2				

사업소공고

◆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17-174호

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을 위반한 위반자에게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보관기간 경과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.

2017년 8월 24일
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

1. 건 명 :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위반 행위자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
2. 근 거 :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1조
3. 공시송달 대상

세목명	과세년월	통지 번호	성명	주소	부과 예정액(원)	자진납부금 액(원)	사유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및 이용 관련 위반 과태료	2017-07	2592	이*규	성남시 수정구 산정대로 ***	500,000	400,000	보관기간경 과

4. 공고기간 : 2017. 8. 24 ~ 2017. 9. 10 (18일)
5. 자진납부기간 : 2017. 9. 11 ~ 2017. 9. 25 (15일)
6. 수령방법 :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환경과에서 사전통지서 및 자진납부 고지서를 수령
7.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환경과(☎02-3780-0787)으로 문의

기 타

◆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-170호

하천점용(변경)허가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 및 30조의 규정에 의거,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(변경)허가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.

2017년 8월 24일
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

1. 하천의 명칭 : 안양천(국가하천)
2.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
 - 성 명 : 서울특별시장
 - 주 소 :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
3.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
 - 위 치 : 영등포구 양화동~금천구 독산동 일원(서부간선도로)
 - 면 적 : <당초> 영구 335,982㎡, 일시 7,314㎡
 <변경> 영구 334,498㎡, 일시 18,656㎡
4. 점용의 목적 및 개요
 - 목 적 : 서부간선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
 - 내 역 :

당 초	변 경
- 서부간선지하차도 연장 10.33km (소형차전용 대심도 병렬터널, 왕복 4차로) - 터널 1식(연장 7,902m, NATM공법) - 사중점부 구조물 1식(U-type L=280m, 개척Box L=810m) - 토공 1식	- 좌 등

5. 점용기간(공사기간) : 허가일~영구(허가일.~2021.03.15.)



함께 서울

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

- 안전한 서울
- 따뜻한 서울
- 꿈꾸는 서울
- 숨쉬는 서울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